

(주)아모레퍼시픽 이사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이사회的高效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4조 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(사외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제5조 (의장)

- 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- ②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의 순으로 하며, 동급의 이사가

여러 명인 경우에는 선임된 날짜가 빠른 순으로 한다. 다만, 선임된 날짜가 같은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6조 (종류와 참석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- ④ 이사는 이사회에 연간 과반이상 참석율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7조 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회 의장이 사고,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8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회일의 7일전까지 각 이사에 대하여 모사전송, 전보,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(컴퓨터통신, 전자우편 등)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,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.

제9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

-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 (부의사항)

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(1) 주주총회의 소집
- (2) 영업보고서의 승인
- (3) 재무제표의 승인
- (4) 정관의 변경
- (5) 자본의 감소
- (6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- (7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
- (8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(9) 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10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- (11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
- (12) 주식배당 결정
- (13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(14) 이사의 보수
- (15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2) 대표이사 업무규정 개폐
- (3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(4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(5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
- (6) 경영진에 관한 규정 개폐
- (7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 분할합병의 결정
- (8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(1) 신주의 발행
- (2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3) 전환사채의 발행
- (4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5) 자기자본 2.5% 이상의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
- (6) 자기자본 2.5% 이상의 해외직접투자
- (7) 자기자본 2.5% 이상의 자금대여, 신규 담보제공, 채무보증 및 채무면제
- (8) 자기자본 5% 이상의 차입계약 체결
- (9) 자기자본 5% 이상의 시설투자 및 증설, 공장신설
- (10) 자산총액 2.5% 이상의 자산취득 및 처분

4. 이사에 관한 사항

- (1)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

5. 기 타

(1) 중요한 소송의 제기

(2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
(3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회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
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
3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11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
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
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
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,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한다.

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12조 (경영진에 관한 사항)

- ① 이사회는 경영진 중 회장을 과반수의 결의로 선임하며, 나머지 업무담당 임원의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한다.
- ② 이사회는 업무담당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③ 경영진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.

제13조 (관계인의 출석)

-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사외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제14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15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와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16조 (간사)

이사회는 간사를 두고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, 이사회 사무 전반을 담당 처리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0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규정은 201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.
5. 이 규정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6. 이 규정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7. 이 규정은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